한국수출입은행

사업타당성조사 (F/S) 지원

한국수출입은행
THE EXPORT-IMPORT BANK OF KOREA

도입배경 및 경과

[도입배경]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선제적 지원

[주요경과 및 향후일정]

- **'20. 3. 12** 업무방법서 개정
- **'20. 3 ~ 4.** 업계의견수렴
- **'20. 5** 업무취급세칙 및 업무취급기준 제정, 기업대상 제도 설명회 개최
- **'20. 6** **사업 공모 착수,** 연간운영계획 수립
- **'20. 7** **사업선정 완료** 및 전담팀 신설

업계의견수렴 (총 27개사)

민간기업 11개사 / 공기업 5개사 / 엔지니어링사 5개사 / 회계법인 4개사 / KIND / 해외건설협회

[기본방향]

- 기업의 니즈를 최대한 수용하는 **고객지향적 제도 마련**
- **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** 사업타당성보고서 제공
- 과당경쟁 방지 및 기업간 컨소시엄 유도로 **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**

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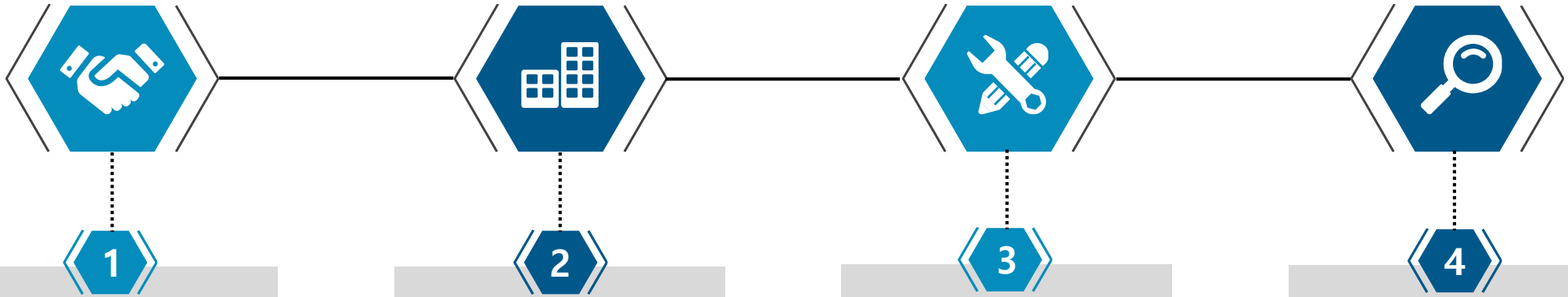

1 대상사업 선정

2 용역수행사 선정

3 용역사업 관리

4 평가의견 조사

대상사업 선정

1. 대상사업 : 수출입은행 고객기업이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형사업

- **고객기업이란?**

  신청일 현재 여신승인액 및 여신잔액 보유 국내기업

- **주요특징**

  - **[성공불 조건]** 성공불 조건으로 신청기업이 사업수주에 최종 성공하는 경우 지원 받은 용역비 전액을 수출입은행 앞 환입

    * 사업수주성공일: 지원이 이뤄진 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 사업주간 금융계약서 서명일

  - **[산업별, 공종별 제한 없음]**

대상사업 선정

2. 지원항목 :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용

- **다른 기관 F/S (Pre-F/S) 기수혜사업**도 지원받는 과업범위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 가능

- 사업별 **지원금액 한도가 별도로 없어** 대형사업 지원 가능

- 신청기업이 **비용의 일부를 공동부담하거나,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**하여 비용 부담하는 경우도 가능

대상사업 선정

[선정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]

- 동일사업을 복수의 기업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모두 배제

- 기선정 사업에 대하여 다른기업이 차기 공모회차에 응모하는 경우

  (과당경쟁 방지 및 형평성 고려)

대상사업 선정

3. 신청서류 접수

- **[공모주기 및 방법]** 반기 1회 정기 시행 (필요시 추가 공모 시행), 홈페이지 공고 (www.koreaexim.go.kr)
- **[신청서류]** 이메일로 접수, **서류접수시** 신청기업 앞 **접수번호 발급**
- **[컨소시엄]** 대표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며, 컨소시엄 개요 및 소개자료 등 제출

  * 컨소시엄 확인서류 (계약서, MoU, 참여의향서 등) 제출 필요

- **외국기업 제출서류는** 사업선정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

대상사업 선정

4. 서류 사전검토

- **심사부적격 판단시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**
- **[심사부적격 사유]**

  - 신청기업이 수출입은행 **여신규정상 여신부적격자(연체 등) 및 여신억제기업**에 해당하는 경우

  - 심사를 위한 **서류가 불충분**한 경우

  - KIND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**동일 과업에 대한 중복수혜**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대상사업 선정

5. 선정방법 : 공모방식,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

- **[선정방법] 종합평점** 및 **연간운영계획**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*하여 선정

  * 예산규모, 사업운영 방향, 산업별 포트폴리오, 특정 신청 기업 및 특정 산업군 편중 등

- **[사업선정위원회 구성]** 내·외부 전문가 (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)

  - 사업별 평가시간 30분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)

- **[평가기준]** 평가배점표 활용 (공고시 첨부 예정)

  - 평가항목: 사업 경험, 사업타당성, 수주가능성, 금융지원가능성, 국내기업지분율, 재무상태, 거래관계 등

  - 컨소시엄은 개별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컨소시엄을 평가

대상사업 선정

6. 공모결과 공지

-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공지

용역수행사 선정

1. 선정방법

- **[공모방법] 나라장터에 공고** 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)

- **[선정방법] 용역수행사선정위원회에서 평가**하여 용역수행사를 선정함

  - (용역수행사선정위원회 구성) 내·외부 전문가 (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)

용역수행사 선정

[용역수행사 선정관련 주요 특징]

- **외국기업은 단독 또는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**
- 컨설팅사 또는 엔지니어링사가 신청기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용역수행사 입찰에 참여 가능
- 사업별로 **부득이한 경우 신청기업의 용역수행사 직접선정 허용**

  * 신청기업이 용역비용의 과반이상을 분담하는 경우, 외국기업의 용역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후 제한적으로 허용

용역수행사 선정

2. 입찰공고

- **[컨소시엄] 공동이행방식**

  - **컨소시엄**의 경우, **신청서**는 **대표사가 작성하여 제출**하며 **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입찰제안서에 명시**하여야 함

- 외국기업 제출서류는 용역관리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

- 외국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, 입찰공고시 **영문공고문 별도 첨부**

3. 입찰관련 사전 협의 및 설명회

- **[입찰공고 전]**

  용역관리담당부서장은 **사업별 사업주와 상세 과업범위, 용역수행사 자격요건** 등 **사전협의 실시**

- **[입찰공고 후]**

  필요시, 용역관리담당부서장이 **용역수행사 후보기업들 대상** 사업별 용역수행 방향 등에 대한 **입찰설명회 실시**

4. 용역수행사 평가방법

- **[선정방법]**

  - 평가배점표에 따라 **기술평가점수 (가중치 90%) 및 가격평가점수 (가중치 10%)**를 반영한 **종합평점**으로 평가하되, **기술배점의 85% 이상 득점 대상**을 협상대상자로 함

  -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 앞 제안 설명을 실시하며,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과업범위 및 자격요건 등을 사전 설명

용역수행사 선정

- **[계약체결 조건]**
  - 컨소시엄인 경우, 상호 연대책임 조건을 계약서상 명시
  - 신청기업이 용역과업에 직접 참여시, 해당 기업도 연대책임 대상인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포함

- **[용역보고서 작성언어]** **국문 또는 영문**
  - 단, 사업별 필요시 국문 및 영문보고서 병행
  - 수출입은행은 사업주와 용역보고서 작성 언어를 사전협의

용역사업관리

1. 사업운영위원회

- **[사업운영위원회 구성]** 수은 내부 구성원 및 사업주*

  * 단독 사업주로 참여시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임직원 1명,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최대 2인 이내

- **[주요 관리사항]**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및 용역보고서 승인

2. 기 타

- **[비용지급]**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 지급은 **계약서에서 정한 바**에 따름

  - 수출입은행과 신청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함

- **[결과보고서]** 사업진행경과보고서 연1회 제출

  - 단, 사업수주성공시 또는 사업추진 중단 등의 경우 보고서 제출 중단

평가의견조사

- 지원 완료 후, **신청기업 및 용역수행사를 대상**으로 지원 결과 등에 대한

  평가 의견 및 건의사항 등 조사 ⇒ **향후 제도개선에 활용**